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3항까지”로 한다.

제4편에 제208조의4 및 제20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8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 ①

법 제180조의4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출 또는 모집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의 기간중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후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확정된 날까지 공매도 주문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경쟁매매 방식으로 매수(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제1항의 기간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법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을 위한 거래 과정에서 공매도한 경우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08조의5(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① 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차거래 종목 및 수량
2. 대차거래 체결일시 및 결제일시
3. 대차거래 상대방
4.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제1항의 대차거래정보가 기록·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것
2.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할 것

가. 대차거래 계약의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

는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보관할 것

나. 대차거래 계약 체결한 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기 전 지체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전산설비에 입력할 것

다.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증권을 대여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제182조제4항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하는 자를 포함

한다)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의 원본을 보관할 것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제375조 중 “제178조의2 및 제180조”를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로 한다.

제3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9조 및 제429조의2”를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법 제428조제3항 및 제429조”를 “(법 제428조제3항, 제429조 및 제429조의3”으로 한다.

1의3. 법 제180조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의 정도는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과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1의4. 법 제180조의4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의 정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가. 공매도 주문금액

나.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다. 위반행위가 주식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에 미치는 영향

라.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87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80조에 따른 공매도의 제한 의무 및 법 제180조의4에 따른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권한

5. 법 제180조의5에 따른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및 제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권한

별표 22 제2호즈목 및 츠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크목을 즈목으로 하며, 같은 호 트목을 츠목으로 하고, 같은 호 프목부터 기목까지를 각각 크목부터 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호목 및 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호. 법인인 자가 법 제180조의5를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 제39의5호	6,000
기.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80조의5를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 제39의5호	3,000

부 칙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① ~ ③ (생략)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80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삭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매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 제3항까지----- ----- ----- ----- -----.
<신설>	제208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 ① 법 제180조의4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출 또는 모집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정정신

고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의 기간중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후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확정된 날까지 공매도 주문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경쟁매매 방식으로 매수(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제1항의 기간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법 제3

<신 설>

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
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을 위한 거
래 과정에서 공매도 한 경우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경우

제208조의5(차입공매도 관련 대차
거래정보 등) ① 법 제18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대차거래정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차거래 종목 및 수량
2. 대차거래 체결일시 및 결제
일시
3. 대차거래 상대방
4.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을 말한다.

1.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제1
항의 대차거래정보가 기록·
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

	<u>할 것</u> <u>2.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할 것</u> <u>가. 대차거래 계약의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보관할 것</u> <u>나. 대차거래 계약 체결한 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기 전 지체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전산설비에 입력할 것</u> <u>다.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증권을 대여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제182조제4항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의 원본을 보관할 것</u> <u>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u>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법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

6조, 제178조, 제178조의2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76조 및 제377조에서 같다)가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26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목적과 조사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품목, 거래유형 및 거래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1의2. (생략)

<신설>

<신설>

-----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법 제180조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의 정도는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과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1의4. 법 제180조의4를 위반한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나. (생략)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등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와 관련이 있는 경우

경우 그 위반의 정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가. 공매도 주문금액

나.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다. 위반행위가 주식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에 미치는 영향

라.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 2100 - 2655